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5년도 주요 변경사항

○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통한 원서접수 가능

기존	변경 후
• PC 웹브라우저로만 원서접수 가능	• PC 및 모바일 웹브라우저로 원서접수 가능(모바일 큐넷 앱으로는 접수 불가)

○ 1차 시험 가답안 발표시간 변경

기존	변경 후
• 시험당일 14:00	• 시험당일 17:00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고려)

○ 원서접수기간 내 편의제공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

기존	변경 후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큐넷-마이 페이지-원서접수내역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

1. 최소합격인원

○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임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1, 2차 분리 접수

구 분	원서접수	시험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25. 3. 24.(월) 09:00 ~ 3. 28.(금) 18:00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25. 4. 26.(토)	'25. 5. 28.(수)
제2차 시험	'25. 6. 23.(월) 09:00 ~ 6. 27.(금) 18:00		'25. 8. 2.(토)	'25. 11. 12.(수)

- ※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 '25. 6. 16.(월) 09:00 ~ 6. 27.(금) 17:00(토·일·공휴일 제외)
-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시작일은 09:00,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쿠팡계좌이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만 가능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4)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1차 시 험	① 재정학 ②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③ 회계학개론 ④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⑤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객 관 식 5지택일형
제2차 시 험	①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② 회계학2부(세무회계) ③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④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 관 식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① 재정학 ② 세법학개론	09:00	09:30 ~ 10:50(8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③ 회계학개론 ④ 상법·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11:10	11:20 ~ 12:40(80분)	과목별 40문항
제2차 시 험	1교시	① 회계학1부	09:00	09:30 ~ 11:00(90분)	4문항
	2교시	② 회계학2부	11:20	11:30 ~ 13:00(90분)	4문항
	3교시	③ 세법학1부	13:40	14:00 ~ 15:30(90분)	4문항
	4교시	④ 세법학2부	15:50	16:00 ~ 17:30(90분)	4문항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세무사법」 제5조 제2항)

- **최종합격 발표일(2025. 11.12.)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4조 제2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 합격에서 제외

나.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세무사법시행령」 제8조제1항)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중 최종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별표 2에 따른 회계학 1부·2부 과목의 평균점수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6. 시험의 일부면제

가. 시험의 일부 면제(「세무사법」 제5조의 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 면제

○ 2024년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이번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후 응시 가능하며, 이번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세무사법」 제5조의2 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무종사 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재정)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 기간은 제외함

※ 경력산정기준일 :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6)

<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기간 : 2025. 6. 16.(월) 09:00 ~ 2025. 6. 27.(금) 17:00까지(토·일 제외)
 - ※ 경력서류 제출 이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경력서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①경력증명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발급자 원본대조확인), ③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공단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담당자 기재 및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출서류서식
 - 경력증명서,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은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2025. 6. 27.(금) 17:00 도착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 시 반드시 봉투 겉면에 「세무사 관련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 최근 5년 내(2020년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서류제출 면제
 - (2019년 이전(2019년도 포함) 서류제출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접수 취소조치)

7. 시험의 일부면제 서류 제출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02512	02-2137-0559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금곡동 1877번지)	46519	051-330-1815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42704	053-580-2375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61008	062-970-1768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 중구 서문로25번길 1 (문화동 165)	35000	042-580-9140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고잔동 625-1)	21634	032-820-8672

8.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일반응시자	530	71	700	340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35	350	204	43(level-2)	375

※ 청각장애인(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점수를 말함. 청각장애인의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수험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1차 시험 시행 전날(2025.4.25.(금))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 단,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기등록된 성적 포함)은 연장 규정이 미적용됨에 따라 인정 불가

○ 해당 외국어 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후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단,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는 1차 시험일 전까지 성적표 원본 및 성적 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

- ❖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시험성적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 영어성적을 사전등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
- ❖ 영어성적 신청서류 오류 및 서류보완으로 인한 시간 소요, 영어시험 시행기관의 진위확인 시간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
- ※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기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기 제출내역은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승인된 성적 확인가능)
-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다른 기관에 등록된 자료(성적 등)는 인정되지 않음**

< 사전등록·제출 방법 >

- ※ 청각장애인 등 별도 성적기준을 적용받는 수험자는 사전등록이 불가하고 기존처럼 원서접수 시 직접 성적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내시험 TOEIC, G-TELP 및 TEPS)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다이렉트 인정(등록) 가능

< 공인어학성적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 >

- TOEIC, G-TELP 및 TEPS시험의 경우, 큐넷을 통해 어학성적의 조회 및 제출 가능
- 큐넷 메뉴 : 세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선택 ➡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선택 ➡ 시험종류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 어학기관 로그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선택 ➡ 자동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
- 승인된 내역은 세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 (TOEFL, FLEX, TOEIC(일본) 및 국외취득성적)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된 성적에 한해 인정 가능

구분	내용																																							
제출시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 진위확인 기간 확보를 위해 제출 시한을 준수하여야 함																																							
제출기간	매월 초 1일부터 10일 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 진위여부 확인 후 인정된 성적은 매월 말 전산에 일괄 입력(등록) 예정이며, 승인된 내역은 세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제출서류	어학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 단, 국외에서 취득한 경우는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일본취득 TOEIC 성적의 경우는 성적표 원본 및 성적확인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																																							
제출장소 및 연락처	<table><tr><th>기관명</th><th>주소</th><th>우편번호</th><th>담당부서</th><th>연락처</th></tr><tr><td>서울지역본부</td><td>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td><td>02512</td><td>전문자격시험부</td><td>02-2137-0559</td></tr><tr><td>부산지역본부</td><td>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td><td>46519</td><td>필기시험부</td><td>051-330-1814</td></tr><tr><td>대구지역본부</td><td>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td><td>42704</td><td>필기시험부</td><td>053-580-2375</td></tr><tr><td>광주지역본부</td><td>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td><td>61008</td><td>필기시험부</td><td>062-970-1768</td></tr><tr><td>대전지역본부</td><td>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td><td>35000</td><td>필기시험부</td><td>042-580-9137</td></tr><tr><td>인천지사</td><td>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td><td>21634</td><td>필기시험부</td><td>032-820-8672</td></tr></table>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9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필기시험부	051-330-1814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필기시험부	053-580-2375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61008	필기시험부	062-970-1768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필기시험부	042-580-9137	인천지사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21634	필기시험부	032-820-8672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9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필기시험부	051-330-1814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필기시험부	053-580-2375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61008	필기시험부	062-970-1768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필기시험부	042-580-9137																																				
인천지사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21634	필기시험부	032-820-8672																																				

< 원서접수 시 등록·제출 방법 >

구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성적 발표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성적 미발표자
	사전등록자*	사전 미등록자	
국내시행 TOEIC, G-TELP, TEPS		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 (자동승인)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제출 불가	'취득 예정'으로 접수하고 1차 시험일 전까지 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 (자동승인)
TOEFL, FLEX, TOEIC(일본) 및 국외취득성적	추가입력(제출) 불필요 (기승인된 성적 자동반영)	취득한 해당 영어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입력화면에서 요청하는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입력하여 접수하고 진위확인을 받아야 함 * 착오 기재 시 성적표 원본 제출 등 소명 필요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제출 불가	'취득 예정'으로 접수하고 1차 시험일 전까지 성적표 원본 등을 원서접수 기관으로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진위확인을 받아야 함

- 수험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시행 기관에 진위여부 조회 예정

※ 공인어학성적 정보의 오입력 등으로 조회가능 기간(시험일로부터 2년) 내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외국어 시험 대체 불인정 등)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5. 4. 25.(금)까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 공인어학성적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실시 >

- TOEIC, G-TELP 및 TEPS시험의 경우, 큐넷을 통해 어학성적의 조회 및 제출 가능
 - 큐넷 메뉴 : 세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참고: 1차 합격 후 2차 불합격한 자가 다음 회차 1차 면제자로 접수할 경우 어학성적은 제출 불필요(공인어학성적은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것으로 2차 시험과는 무관함)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제출 및 입력한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9. 응시원서 접수

※ 1, 2차 분리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25. 3. 24.(월) 09:00 ~ 3. 28.(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25. 6. 23.(월) 09:00 ~ 6. 27.(금) 18:00 [5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시작일은 09:00,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 '25. 6. 16.(월) 09:00 ~ 6. 27.(금) 17: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mu>)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 단체접수는 불가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수험자는 접수완료(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제1차 시험 30,000원, 제2차 시험 : 3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쿼계좌이체, 간편결제) 이용
-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세무사법시행령」 제6조)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60% 환불	• 제1차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 제1차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시자 •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 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에서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 환불신청에서 신청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10. 응시편의 제공

가.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 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 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해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제출 시) 원서접수 기간 내 [큐넷 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응시시험 편의제공사항 수정 및 확인]에서 편의제공 증빙서류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원서접수 기간 포함)에 편의제공 증빙서류를 응시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제출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나.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					
장애유형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답안작성 방법	- 확대 답안지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지체 장애	(1) 상지 중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2) 상지 경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3) 하지 (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 단,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는 종목에 한정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4)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1) 또는 (2)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3)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해당 없음	
청각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①,②,③호 중 하나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①,②,③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안전한 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④,⑤호 중 하나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기간 : '25. 4. 26.(토) 17:00 ~ 5. 2.(금) 18:00 <7일간>

나. 방법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

12. 제2차 시험 의견제시 접수

가. 일시 : '25. 8. 2.(토) 18:00 ~ 8. 8.(금) 18:00 <7일간>

나. 방법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제2차 시험은 가답안 및 최종정답을 공개하지 않음

13.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5. 5. 28.(수) 09:00

○ 제2차 시험 : '25. 11. 12.(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mu>) [60일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간]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교부

○ 발급기관 : 국세청(소득세과)

○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14. 수험자 유의사항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포,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함

- **(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확인 서비스)** ① 정부24·PASS 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및 PASS 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모바일 공무원증 ④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및 정부24,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 확인 서비스 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포함)
- **(실물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서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 컬러)된 재학증명서(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⑥ 서울시교육청 하이잡하이유 앱에 발급된 스마트학생증(서울 소재 특성화고 한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의 사유가 발견 될 때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9.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 등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1.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을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4.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세무사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형별 기재란에 표시된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

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 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 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세무사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신청서

세무사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			
1. 수험자 서약사항			
본인은 영어시험성적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 제출서 및 붙임자료(영어시험 성적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3. 영어시험관련 내용			
시험종류	☐ TOEIC ☐ TOEFL ☐ TEPS ☐ G-TELP ☐ FLEX	시행국가	
수험번호		취득점수	
시험일자	. .		
4. 제출서류 내역			
제출서류	☐ 영어시험성적표 ☐ 성적확인동의서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제1차시험 영어과목 합격을 위하여 위와 같이 다른 시험기관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을 붙임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영어시험 성적표(원본) 등 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2】 성적확인동의서

Authorization

I hereby authorize the TOEIC representative in _____ to confirm for the TOEIC Committee / ICF my TOEIC scores per the information below. On my request, the ICF may relay the scores to a third party.

First name: _____

Family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Test site: _____

Test date: _____

Test application (admission) number: _____

Address _____ on _____ test _____ application _____ form:

Telephone number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

● TOEIC Score

Listening: _____

Reading: _____

Total: _____

Please confirm the above scores and report confirmation to:

TOEIC Committee / ICF

#56-15 Jongno 2 ga, Jongno-gu, Seoul, Korea 110-122

E-mail: check@toeic.co.kr

Telephone number: 82+2 2280-7294 / Fax number: 82+2 2280-7369

Signature of candidate, as it appears on passport: _____

Date of Authorization: _____

Unless renewed, this Authorization will expire 90 days after the date above written, at which point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

(앞 쪽)

(신문용지 54 g/m²)

작 성 요 령

1. 이 경력증명서는 최종 근무처의 소속행정기관장(부대장)이 발급합니다.
2. ④근무처란 및 ⑤직급(계급)란에는 공무원(군인)으로서의 현재 또는 퇴직 당시의 근무처 및 직급(계급)을 기재합니다.
3. ⑥세무사자격시험일부면제구분란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4. 경력란중 ⑦근무기간란 및 ⑧근무연수란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세행정·지방세행정 또는 재정병과근무에 종사한 근무기간 및 근무연수를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⑪확인기관의 장란은 지방세행정경력을 확인할 때에 사용합니다. 최종 근무처의 소속행정기관장이 인사기록카드 사본에 의하거나 또는 관련기관간의 확인과정 등에 의하여 지방세행정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관의 장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⑩담당업무란에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근무당시 소속행정기관장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6. ⑫합계란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의 당해 경력을 합계하여 기재한 후 그 위에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별지 4】 세무사 일부 면제 신청서 양식

세무사자격시험 일부면제신청서														
1. 수험자 서약사항														
본인은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 신청서 및 첨부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자격취득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하고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험자 기재사항														
자 격 명	세 무 사	구 분	☐ 1차 면제 ☐ 1차 및 2차 일부면제											
성 명		주민등록 번호												
E - m a i l														
전 화 번 호	휴대폰 : 자택(직장) :													
3. 제출서류 내역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부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 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법 에 따라,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하여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 · 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외국인등록번호 - 경력사항, 자격취득사항 - 본인이 응시 · 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제출서류)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 (응시 · 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 · 이용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TOEIC 위원회 등 국가자격시험별 시행 근거 법률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 성명, 국적,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 경력사항, 자격취득사항 - 본인이 응시 · 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제출서류)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 (응시 · 면제 자격 서류심사 등)	- 기획재정부, 국세청 :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준영구) - 국가자격시험별 시행근거 법률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기간동안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3.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

개인정보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시험의 시행 - 시험 합격자의 관리 - 세무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준영구) - 국가자격시험별 시행근거 법률에서 정한 공인어학시험의 실시기관 :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기간동안

※ 수집근거: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